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2008. 6

외 교 통 상 부
인 권 사 회 과

목 차

I. 우리나라 UPR 심의 개요

1. 전체일정
 2. 심의 개요
 3. 심의 주요내용
 4. 보고서 채택
-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 개요

II. 심의 및 보고서 채택시 발언문

1. UPR 심의(인권이사회 W/G, 5.7)
 - 가. 모두발언
 - 나. 각국 발언
 - 다. 마감발언
 - 라. 심의전 사전질의
2. UPR 보고서 채택(인권이사회 본회의, 6.12)
 - 가. 모두발언
 - 나. 각국·이해관계자 발언
 - 다. 마감발언

III. UPR 관련 주요 보고서

1. 국가보고서(국·영문)
2. 인권고등판무관실 취합보고서
3. NGO 종합요약 보고서
4. 최종 결과보고서

IV. 기타 : UPR 국내 협의 과정 등

1. NGO와의 협의회 개최
2. 국가보고서에 대한 일부 NGO 단체 입장
3. 기타 의견수렴
4. UPR 후속조치 이행관련 간담회 개최

V. 참고자료

1. 인권이사회 설립결의
2. 인권이사회 제도구축 관련 결의
3. 인권이사회 제도구축 후속결정
4. 트로이카 선출 의장성명
5. UPR modality 및 관행에 관한 의장성명
6. 전체회의 modality
7. UPR 전체일정
8. 제2차 UPR 회기일정

1. 우리나라 UPR 심의 개요

1. 전체 일정

가. 보고서 준비과정

- 1.10 관계부처 협의 개최 (외교부 주관)
 - UPR의 중요성 감안 협조 당부
- 1월말 UPR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부처별)
- 2월말 초안 작성 (외교부)
- 3월초 초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 3.10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 민간 의견 수렴 계속
- 3.18 NGO와의 협의회 개최
 - 관계부처, 국가인권위 및 일부 NGO 참석
 - 모두발언까지만 언론 공개
 - ※ 민변 등 NGO 보고서 작성 NGO 불참(완전한 언론공개 요구) / 3.20 의견 서면 제출
 - ※ 3.19 국회,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등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메일 송부
- 4.2 국가보고서 제출 (영문)
 - 국·영문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 ※ NGO 협의회시 제기사항, 유엔, 제네바 대표부 의견 반영
 - ※ Amnesty International측은 4.20자 서한을 통해 “보고서 작성 핵심 단계에서 NGO와의 협의 노력을 크게 환영”

나. 심의

- 5.1 관계부처 심의 준비회의 개최
- 5.6 제네바현지 대책회의(심의 리허설) 개최
- 5.7 **심의**
- 5.9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 ※ 5.8, 5.26 동 보고서 일부 오기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다. 심의결과

- 5.30 후속조치 이행관련 간담회 개최
- 6.10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 전달
- 6.12 **제8차 인권이사회 본회의 보고서 채택**

2. 심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08.5.7(수) 14:30 ~ 17:15, 스위스 제네바

※ 5.5-16간 개최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UPR 회기중

나. 심의 참가 대표단

- 수석대표 :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교체수석대표 : 이성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대 표

【외교통상부】

- 조준혁 국제기구심의관
- 장재복 인권사회과장
- 홍석인 제2차관 보좌관
- 장현철 인권사회과 1등서기관
- 안지원 인권사회과 3등서기관

【주제네바대표부】

- 장동희 차석대사
- 임훈민 참사관
- 김필우 1등서기관

【법무부】

- 홍관표 인권정책과 서기관
- 손명지 인권정책과 사무관

【노동부】

- 이상복 국제협력팀장
- 이도경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김소연 공공노사관계과 사무관

【보건복지가족부】

- 양동교 아동청소년권리과장
- 김홍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
-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방부】

- 이성주 인권담당관

【여성부】

- 강선혜 교류협력과장
- 이진희 교류협력과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 김형기 교육복지기획과 사무관

※ 주제네바대표부 소속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파견관이 참석

※ 국가인권위,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참관·활동

다. 심의 진행순서

- 개회선언(의장) → 인사말 및 대표단 소개(주제네바대사) → 모두 발언(김성환 차관) → 각국 발언 → 우리측 1차 답변 → 각국 발언 → 우리측 2차 답변 → 마감 발언(김성환 차관) → 심의 종료

3. 심의 주요내용

가. 모두발언 요지 (김성환 제2차관)

1) 인권관련 우리정부의 기본입장

- 한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내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중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극빈과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는바,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여타 유엔 회원국과 공유하고자 함.
-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인권 이사회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 현행 한국 헌법은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은 6대 핵심인권규약 당사국이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며, 여타 인권관련 주요 협약도 서명·가입을 검토중임.
-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의 1차적 의무와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하에 인권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을 채택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 법무부 인권국 신설(2006), 『2007- 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채택(2007.5) 등

2) 주요 인권이슈

- (개인의 자유와 안전) 인권조약 이행감시기구의 심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 반영해 옴.
- (차별 금지) 성·나이·질병·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 문제에 지속 대처해 오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 (여성의 권리) 모든 정부정책에 성인지적 시각 반영,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제고, 여성 인력의 개발 및 극대화, 경제활동에 여성 참여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 관련) 한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더 좋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중인바, 상호이해와 인권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정착 및 강화에 노력할 예정임.

3) 회원국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 사형제 관련, 동 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가 형벌정책 및 핵심인권과 관련된 중대 사안인바, 형사정책, 사회현실,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임.
- 이주노동자 인권관련, 불법체류자의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으며, 동 관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 인권이사회 주제별 특별보고관 상시 초청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제7차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상시 초청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음.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 작성시 시민사회와의 협의 관련, 한국 정부는 NGO와의 협의회를 비롯, 국회, 학계, 국제기구 출신 전문가, 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개도국과의 민주화 경험 공유 및 인권 framework 형성 관련,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공동체,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 문명간 연대 등을 통해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개도국과 협력하고 있음.
- 여성 폭력 관련, 개정 특별법을 통해 상습 폭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 개선 및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특별 치료프로그램을 시행중임.

나. Interactive Dialogue시 주요 제기사항

※ 33개국 발언

【 질의 사항 】

1)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EPS)가 한국과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지 문의(파키스탄)
-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방 및 사회적·문화적 권리, 노동조합 결성권 등에 있어 관행적 차별을 지적(알제리)

- 인권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처우를 평가하고,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문의(필리핀)
-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이 점차적으로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있으나,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했듯이, 한국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예술홍행비자(E-6)가 인신매매에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페루)
- 직장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및 착취를 환기하고,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가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에 취약함을 지적(캐나다)
- 외국인 여성 대부분이 불법이주노동자임을 지적하면서, 외국인여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및 여성 착취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 등을 문의(러시아)
-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의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 직장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미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언급. 예술홍행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성산업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동 비자 발급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문의(방글라데시)

2) 사형제도

-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최소한 법률상(de jure)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프랑스)
- 2007년 사형 구형(2명) 포함, 60명 사형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정부가 사형제 폐지의 절대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및 여론형성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사형제폐지법안 제정의 구체적 일정을 문의(룩셈부르크)
- 특정범죄의 경우 여전히 사형구형이 가능하다는 NGO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의 실질적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대한 환영을 표명하고 시민적·정치적권리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사형제) 관련 적극적 검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호주)

3)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자의적 체포와 구금 또는 개인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미국)
- 국가보안법의 지속적 적용으로 인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간 어떤 접촉이나 통신도 불법화하고 있는 등, 시민적·정치적권리 규약 9, 18, 19조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북한)
-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조치 문의(영국)

4) 고문

- 고문방지협약 권고사항 채택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주자 또는 시위자들에 대한 법집행 공무원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지적하고, 구금시설에서 이주자 및 시위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캐나다)
- 고문과 구금시설내에서의 사망(자살 포함)간의 상관관계 분석 여부 및 구금시설내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지를 문의(체크)

5) 차별 금지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 양성평등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고, 외국인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등을 문의(터키)
-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대책(특히, 고용에 있어) 문의(프랑스)
- 차별금지법안을 환영하면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체크)
-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우려사항(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후속조치 문의(이집트)
-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시기 문의(일본)

- 양성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조치들을 평가하고 대표단에 의해 제공된 차별과 여타 착취로부터 여성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관련 정보에 감사를 표명(루마니아)
- 차별금지 보장 방안 문의(아제르바이잔)

6) 아동권리 / 아동체벌

- 아동체벌 금지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환영(우크라이나)
- 외국인 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등을 문의(멕시코)

7) 여성권리(가정폭력)

- 여성 인권 개선을 국가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을 권고(이태리)
-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뿌리깊은 성(性) 고정관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슬로베니아)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촉구(멕시코)
- 차별금지법안을 환영하면서, 여성, 아동, 동성애자, 장애, 난민 등 사회내 취약계층에 대한 동등한 처우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가정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유사한 조치가 직장내 성희롱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네덜란드)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평가하고, 불법 매춘 만연, 여성 성착취에 대한 우려 표명(벨기에)
- 외국인배우자가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아서, 한국인 남편에게 전적으로 생활을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배우자들이 경제분야에 활발하게 참여케 하고,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독일)

8) 난 민

-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통한 난민신청자 및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문의하고 난민인정심사 중 이들의 생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문의(루마니아)

9) 기타 인권이슈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문의(슬로베니아)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문의(일본)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문의
 - 기업, 언론에 대한 인권교육(콜롬비아)
 - 지위, 개혁 조치 및 파리원칙에 입각한 인권위 강화 방안(프랑스)
 - 독립성(벨기에)
 - 권고 이행(우크라이나)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시행과정에서의 도전과제 관련 문의(인도네시아)
- 비정규직보호법 이행(파키스탄)
- 에이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유감 표명(벨기에)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995),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2006) 방문을 언급하면서, 특별절차 보고관에 대한 상시초청 수락 시점 문의(라트비아)

10) 여타 사회권 분야

- 한계계층의 자립지원 대책 문의(중국)
- IMF 이후 한국내 가족붕괴 및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문의(말레이시아)

【 권고 내용 】

번호	권고내용(국가)
1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2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3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5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채택(북한)
6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 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초국가 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8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9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알제리)
11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13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14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15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1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번호	권고내용(국가)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18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19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20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최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벨기에)
2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등 고문 및 학대 대처 조치 강화 및 효과적인 국내예방 메커니즘 설치(체크)
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크)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25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27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28	여성의 권리 증진이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29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30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31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32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33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다. 우리측 답변사항

【 제1차 답변 】

1) 이주노동자

-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보험을 통한 퇴직금 보호, 도입 및 재입국 절차 개선 등 노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자발적 귀국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 ※ (아래는) 수석대표 설명후 노동부 관계자 보충설명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호
- 여성 이주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감독시스템 운용

2) 사형제

- 사형제도 존폐여부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 형성 및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
-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 모라토리움 결의안 논의시 부처간 협의

3)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 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적용

4) UPR 후속 이행과정에서 성 인지 관점

- UPR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 여성부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으며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성 인지 관점을 지속 반영할 예정

5) 가정폭력

- 2002년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2004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검사의 역할 강화, 피해자 치료 지원 노력 등을 설명

6)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시행

- 2007.5월 수립 이후 지난 1년간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검토한 후 일반에 공개할 계획

7)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고 신중하게 관련법을 운용

8) 고문 정의 규정

- 국내법상 고문의 개념을 직접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형법 등 여타 법률에서 고문을 처벌

9) 구금시설내 고문

- 국가인권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 구제절차를 갖추었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해서도 노력중
- 교정시설내 자살률은 일반국민의 자살률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입소전 병력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중

10) 차별금지

- 헌법 제11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차별사유를 열거적으로 예시한 것이고, 그 외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된 차별사유에 의한 차별도 헌법에 따라 금지

11)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 외국인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

12) 신고죄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문제

- 성폭력범죄는 제반 요인을 감안,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권 발동 등과 같이 예외를 넓게 인정

13) 비정규직

- 2007.7월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규모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14) 고용평등

- 취업여성에 대한 육아·보육 지원 및 노동시장 이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등 차별을 엄격하게 제한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강화

【 제2차 답변 】

1) 국제인권협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철회

- 6대 핵심인권협약 가입국으로서 추가 가입 및 유보철회 가능성을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
 - 국가인권위에서 동 선택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방지활동을 전개
- 이주자권리협약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 등 국내법령, 국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나갈 예정이며, 강제실종협약에 대해서도 서명전 관련 국내법령의 처벌규정 등을 검토
- 장애인권리협약은 조만간 비준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내 노동 상황, 법, 제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정책·법률·제도·관행에 대한 일부 권고가 단기간에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나, 2007년말 현재 정책·법률·제도·관행에 관련된 권고는 약 6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된 권고는 87% 수용

3)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 다양한 출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일자리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용

4) 사회보장

-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계층에게는 현금보조금 지급 외에도 일자리 제공,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

5) 이주 외국인

- 2008.3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 이주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6) 아동체벌

- 가정내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예정
- 2007년부터 체벌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을 확대

7) 양심적 병역 거부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2007.9월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할 계획

8) 여성 권익 증진

- 2001년 여성부를 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 문제와 관련, 2007년 CEDAW는 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
 -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2003년 양성평등진흥원을 설립하여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이주여성 쉼터, 전문통역 상담원 배치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사전교육을 추진 예정

9) 장애인

-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을 준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4월부터 시행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애인 차별실태 등에 대해 조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개선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예정

10) 난민

- 난민인정을 위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UNHCR과도 긴밀히 협력중
- 난민신청자에게는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업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중

라. 마감발언 요지 (김성환 외교부 제2차관)

- 금번 심의 참가국들의 활발한 활동과 우리 국가보고서에 대한 건설적인 논평에 사의를 표명함.
 - 회원국들의 진실된 조언은 우리 정부가 인권분야에서 좀 더 높은 기준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우리 대표단이 금번 심의에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였으나, 일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개최 인권이사회 본회의시에 서면 답변 계획임.

- 우리 정부는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안에 대해 열려있으며 추후 심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과 추가 협의 예정임.
-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의 좀더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며, 헌법의 구현, 국제인권 의무의 이행을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이주자 인권 관련 국내적 협의 및 타국의 경험, 모범사례 등을 공유코자 하며, 미비준 인권협약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 대한민국은 UPR을 완전히 지지하며 UPR이 국제사회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며, UPR을 통해 인류가 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전진할 것으로 확신함.

마. 관찰 및 평가

- 2006.6월 인권이사회 출범, 2007.6월 UPR 등 제도적 이슈 타결 이후 세부 논의를 통해 2008.4월부터 UPR 심의가 시행되고 있는바, 제2차 UPR 회기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심의를 최초로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 여타 우리가 가입한 인권협약 감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 심의가 개별협약 내용의 이행에 관한 부분적 심의를 받는 반면, UPR 심의는 모든 인권 상황을 다루며, 우리정부의 인권이사회 입후보시 제출한 자발적 공약 이행여부 등도 대상
 - 우리나라는 초대 인권이사국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세계 각국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UPR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인바, 금번 심의보고서 작성 과정, 국가보고서 체계 및 내용, 심의 준비 및 태도 등에서 모범적으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심의시, 33개 국가가 사형제, 국가보안법, 고문,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이주자, 여성의 권리, 소수자 차별 문제 등에 대한 국내 입법, 개선 노력 등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였음.

- 상기 주요 인권이슈 일부분(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사회상황 혹은 국민감정 등과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여타 기본적 자유권 관련 사항이 거의 제기되지 않은 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다만, 이주자, 여성, 아동, 동성애자 관련 이슈는 소수자 권익증진 및 차별 금지 분야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심의에 제기된 이슈들은 국내 NGO 및 인권협약 감시기구 등에서 대부분 제기된 바 있는 사안들로서 UN 회원국 등 국제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시각을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가 향후 국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 여지가 있는 사안들을 발굴하고,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4. 보고서 채택

가. 일시 및 장소 : 2008.6.12(목) 12:00, 제8차 인권이사회

나. 주요 논의내용

【 우리측 모두발언 (이성주 주제네바대사) 】

- UPR W/G 보고서 권고사항(33개)에 대한 정부입장을 일반적으로 언급
 - 여성 인권 관련 권고 등 주요 권고사항 수용
 - 고문방지선택의정서(OPCAT),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동 차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2조 유보 철회 등에 대해서는 검토 지속 필요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ICRMW) 관련 권고는 국내 주요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현시점에서 수락은 어려우나, 외국인 인권 보호 및 복지 관련 현재 국내법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 UPR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이행 메카니즘 논의
 - 현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또는 별도 전담 후속 메커니즘 등

【 각국 및 NGO 발언 】

- 북한(최명남 참사)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국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인(comprehensive) 조치를 촉구
 - ※ 국가별 발언은 북한, 말레이시아 2개국만 시행한바, 말레이시아는 UPR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긍정적인 engagement를 환영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분야 등 인권개선 조치 평가
- 여타 NGO 발언
 - (국가인권위)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8조 개정 등에 대해 실행 가능한(viable)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

- (인권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 집시법 개정,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의 조치 촉구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가족형태, 국적, 병역, 학력,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항을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에 포함 요청
- (국제사면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22조 유보철회, 여성이주노동자 보호, ILO 미비준 핵심협약 비준 등 요청
-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이행 촉구

【 마감발언 】

- 한국 정부의 인권증진 약속 이행에 UPR이 기여할 긍정 역할 평가
- UPR 제도 일반의 향후 기여에 대한 긍정 기대 표명
 - UPR 국가보고서 준비과정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권상황 증진에 기여
- 촛불집회 제기관련,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다.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소관부처
1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수용	법무부
2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동 협약 25조(e)에 대해서는 유보 고려	법무부
3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수용	노동부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법무부
5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채택(북한)	입장 계속 검토	법무부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소관부처
6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및 국제 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 설치	법무부 교육부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초국가 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이주자 및 동 가족들의 보호하기 위한 권고의 의도 및 정신을 환영하지만 국내 주요 법 규정과 충돌되고 있는 동 협약 가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주자 등의 건강, 안전, 고용 등 인권을 관련 국내법하에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은 긍정 검토 예정	노동부 법무부
8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수용	노동부 법무부
9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수용	법무부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 하는 입법조치(알제리)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	법무부
11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수용	법무부 노동부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수용	법무부 경찰청
13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수용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
14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수용	법무부 보건부
15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수용	여성부 보건부
1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국내법 개정의 범위 등 연구후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 정립 예정이며 현재 관련 연구중	법무부 외교부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국방부 법무부
18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수용	여성부 외교부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소관부처
19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검토 예정	법무부
20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최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법무부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벨기에)	수용	여성부 법무부
2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등 고문 및 학대 대처 조치 강화 및 효과적인 국내예방 메커니즘 설치(체크)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법무부
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크)	헌법, 인권협약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인권위가 차별관행에 대한 활동 수행중	법무부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법무부 국방부
25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노사정협의 및 관련부처간 협의 필요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노동부 법무부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법무부
27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법무부
28	여성의 권리 증진이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수용	여성부 법무부
29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교육부
30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수용	법무부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소관부처
31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수용	여성부
32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수용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33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법무부

※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입장(영문)은 199~205페이지 참고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제도 개요 】

□ 개요

- 개념 :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정례 검토하는 활동
 - 매년 2주 기간 검토회의를 3회 개최하여 총48개국씩 검토
 - 현행 이사국 우선, 지역별/읍저버 국가 안배, 알파벳 순으로 결정
 - ※ 북한은 09년 하반기 검토 대상

참고

- 1차 UPR(08.4.7-18) 심의 대상국(16개국, 순서별)
 - 바레인, 에쿠아도르, 튀니지, 모로코, 인도네시아, 핀란드, 영국, 인도, 브라질, 필리핀, 알제리,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체코, 아르헨티나
- 2차 UPR(08.5.5-16) 심의 대상국(16개국, 순서별)
 - 가봉, 가나, 페루, 과테말라, 베냉, 한국, 스위스, 파키스탄, 잠비아, 일본,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프랑스, 통가, 루마니아, 말리

○ 시행 배경

- 구 인권위원회가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정치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06.6 출범한 인권이사회가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Peer Review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
- 비난보다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 및 자문 제공에 중점

□ 검토절차

- 아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권고 및 보고서 채택(3-4시간 소요)
 - 인권보호제도, 성과, 제약 등 관련 해당 정부 작성 보고서(20쪽 이내)
 - 협약기구, 특별절차 등 보고서를 OHCHR이 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여타 관련 stakeholder가 제공하는 정보(OHCHR이 10쪽 이내)
- 검토 기관 :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W/G(회의주재 : 이사회 의장)
 - 읍저버 국가도 참여·발언 가능(NGO는 참관가능하나 발언 불가)
 - 추첨으로 선출된 서로 다른 지역 그룹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 그룹(troika) 구성, 상기 W/G 보고서 준비 업무 담당
- 검토 최종 결과 : 인권이사회 본회의(Plenary)에서 채택
 - 검토회의 과정 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 포함.
 - 인권이사회는 UPR에 대한 지속적 비협력국 문제에 대처(address)

II. 심의 및 보고서 채택시 발언문

1. UPR 심의 (인권이사회 W/G, 5.7)

가. 모두발언 (김성환 외교부 제2차관)

Mr. President,
Madame High Commissioner,
Distinguished Representatives,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rivilege to repres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this important sess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My delegation welcomes this opportunity to engage in discuss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PR is a project of great value for improving the rights of all humankind. The review process which was launched last month will present a very challenging task for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nd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However, the opportunity for peers to look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all Member States represents a value-added contribution to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he cooperative and constructive approach shown by the states under review as well as all participants will enable us to have the expectation and confidence that we can discuss country specific issues in a fairer and more transparent way. My Government is determined to contribute to the full success of the mechanism.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confirms our strong commitment to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It is a pleasure for me to remind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sincerely fulfilling our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as evidenced in the national reports,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 is our firm policy to fully cooperate with the UN mechanisms and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achieving this noble goal. In this regard, I wish to remind all of you that last March my Government joined the countries having extended a standing invitation to all Thematic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My country has achieved democracy with rule of law, pluralism and good governanc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t is easily forgotten that the modern Korea started from the ruins of war, faced extreme poverty and experienced almost 40 years of authoritarian rule. Our achievements are the result of the tireless efforts. We value the lessons we have learned on the road to democracy and development and even the fierce challenges we have had to tackle. I believe our experiences deserve to be shared with other Member States.

It is our firm belief that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ing. It is not a case of one prevailing over the other. That is also strongly emphasized in the three pillars of the UN. We also believe that democracy, beyond mere electoral institutions, can be consolidated in an atmosphere of full respect for freedom, equalit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Our road to democratization represented a struggle for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It is a truth that we have learned in this process that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celerate and reinvigorat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in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relatedness and interdependence of all human rights. Re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s universal values",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last February, approaches human rights issues in the discussions in multilateral fora,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uncil.

Mr. Presiden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basic and supreme legal document achieved as the fruit of the tireless process of democratization. It enumerates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 wide range of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It also declares that freedoms and rights are not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Even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a Human Rights Act, a range of laws aim to realize and implement the spirit and substance of the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six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t represents its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standards agre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ffort to fully adapt itself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taking domestic procedures for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are also considering sign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acceding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rough inter-Ministerial discussions. When considering ratif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e first conduct a review to consider whether domestic laws and practices comply with treaty obligations. The process requires, in some cases, a somewhat longer period of review.

It is our view that the primary duty and responsibility to confirm and guarantee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for all should lie with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I will tell you about princip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Korea.

My Government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Bureau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6 to comprehensively pursue various human rights issues and policies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The Ministry of Justice coordinates many areas of human rights policies through policy consultative channel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My Government adopted the National Action Plan 2007-2011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in May 2007. This mid-term Action Plan reflects the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standards.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the UN treaty monitoring bodies were set as standards in the NAP.

The Action Plan presents the detailed roadmap to implement individual issues corresponding to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ith an equal emphasis on each. It accords special attention to the vulnerable or minorities such as women, children and juvenile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victims of crime, foreigners, Koreans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refugees, North Korean resettlers, persons with specific diseases and sexual minorities. The NAP 2007-2011 is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on human rights in content and is

inclusive in its drafting as well as in its implementation.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civil society and the press can submit their opinions on the on-going NAP.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reflects the changes in human rights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by the stakehold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was launched in 2001 in full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It plays a central role in monitor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government agencies, and in shelters,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The Commission has been making recommendations for policies and legislation, engaging in the constructive expression of opinions on current human rights issues. In 2006, more than 6,000 complaints were reported to have been raised. There has been a recent rise in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mainly due to the public's rising awareness of the right to equality and social rights. Upon the recommendations and view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Government takes them into earnest account in its policy-making proces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which was launched in February 2008, integrated the existing institutions, the Ombudsman of Korea, the Korean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provide a one-stop service for addressing public complaints and filing administrative appeals.

Now let me focus on several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The first is about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The UPR is devised not to duplicate but to complement the UN treaty monitoring bod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the subject in the past four years to the examinations by several treaty bodies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amongst others. We appreciate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the treaty bodies. We continued to project the treaty bodies' opinions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by amend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Penal Procedure Code and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Various types of procedural measures are take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detainees and crime suspects.

(The second is about Anti-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declares that nobody shall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in any aspect of life and the government is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ungrounded discriminat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One of the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has been the draf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hich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My Government will continue to address discrimination based on sex, age, disease, race, disability, etc., and to provide relief measures, individually provided by various laws. The Act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xpands their rights to equality and full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al, artistic and sports activities and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 third is about Women's Rights)

The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ir rights remain a priority. Sin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as created in 2001, consistent and systematic policies for women have been established. This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advancing women's status and rights. The government's policy is mainly directed at: project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all government policies, elevating women's representation in policy-making, developing and maximizing female human resources, improving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equal employment and fomenting family policy based on gender equality.

Much focus is centered on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is our strong view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not a private issue but one which it is a state's responsibility to address. My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measures to protect women's rights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It has also strengthened effective legal measures against sexual offenders and procurers, while providing one-stop services for victims of violence, including sexual exploitation

(Now let me touch upon the issue relating to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society is now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We have a long tradition of harmony and inclusiveness. We celebrate diversity, recognizing it as a source of

strength. More peoples of foreign origin enter our country to live due to international marriages or to seek employment. International marriages reached 11.9 per cent (41% in rural areas) of the total number of marriages in 2006 and 1.1 million migrants, legal or illegal, ar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build a society where their rights are fully respected and better opportunities are provided. New legislation such as the Basic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trengthens the oblig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other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and their children in Korea. The Government, through the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will continue to devise measures to foster an atmosphere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vulnerability of migrant workers requires a more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ey are vulnerable due to distance from their home country and subject to a certain degree of discrimination for many reasons. Lack of effective domestic legislation, cultural misunderstanding or forms of racism might be root causes of such discrimination. We introduc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 2004 to give the protection of legal status to migrant workers, to prohibit discrimination, to recognize their rights of access to a system of redress and to ensure access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Under the EPS, Korean labor laws are applied equally to foreign worker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are willing to improve it.

The Government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migrants irrespective of their residence status. The Government has pursued various programs to support the provision of good quality education t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Questions Submitted in Advance

Now I would also like to thank Denmark, Latvia, Sweden,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K) for their questions submitted to our delegation in advance. Mr. President, with your permission, I try to answer them.

1. I address first, the question raised by Denmark, Sweden, Netherlands and the UK regarding the death penalty issue. I believe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 very important issue related to core human rights as well as the State's criminal policy. This issue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its criminal justice function, social circumstances, public opinion in a comprehensive way. It requires national consensus building process along with further in-depth researches. The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uld also be understood as an issue closely linked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tself.
2. In response to a question by Denmark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s is the case in many countries, foreigners who are not legally permitted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sent back to their home country. However, they can seek remedies through the Ministry of Labor or civil law suits in case of delayed payment or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etc. and are permitted to stay until all related procedures for remedies are taken.
3. Latvia asked us about the matter of the standing invitation to all Thematic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 am pleased to reaffirm that we extended a standing invitation to all Special Procedures last March at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Seven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t is our firm conviction that the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will contribute to broadening our horizon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4.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n the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in the preparation of our national report, we made the first draft of our national report open to the public from early March through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y individual was invited to express his or her opinions on the report. We sought to gather view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s, expe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 activists through the customized E-mailing service. We reflected the opinions of some NGOs through the consultative meeting on 18 March. Some NGO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ve meeting provided the government with their views in written form, immediately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5. In response to the question from the UK concerning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is an exemplary national institution accredited with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is serving as the vice chair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lso welcomed the national machinery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s. The status of the NHRCK as an independent body from the government remains intact under the present administration.

6. There was a question posed, also by the UK, regarding our role in sharing its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establishing a human rights framework with developing economies. The ROK takes a more grand approach to the expansion of universal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rather than a direct approach to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First of all, we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initiatives for the spread of democracy from their first stages, based on our conviction that democracy provides more favorable conditions for human rights.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the 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other democracy related initiatives are valuable fora for sharing our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for exploring concrete areas for cooperation. The Alliance of Civilizations initiated by Spain and supported by Turkey and the UN,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ey human rights issues. Furthermore, we are endeavoring to expand our financial contribution to specialized funds for technical assist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ways to strengthen and give more concrete shape to our role in those fields and stand ready to forge stronger bonds of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 States.

7. I would also like to respond to the UK's question on the Penal Procedure Code. The Government have conducted several times of education on the amendment to the Penal Procedure Code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of the prosecutor's office so that the law can be fully implemented. Video-taping interrogation is widely used i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and witnesses. 19 thousand cases of video-taping are reported in 2007.

8. Netherlands raised the issue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The Korean Government imposes more severe punishment on habitual offenders through the revised Special Act. Furthermore, improved medical assistance program for victims is now provided by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Meanwhile,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s of violence, we are conducting various special treatment programs for offenders.

We are now open to any further comments and suggestions.

Thank you, Mr. President.

나. 각국 발언

순 번	국 가	순 번	국 가
1	브라질	18	영국
2	인도네시아	19	룩셈부르크
3	파키스탄	20	이집트
4	북한	21	방글라데시
5	터키	22	러시아
6	알제리	23	라트비아
7	캐나다	24	이탈리아
8	프랑스	25	루마니아
9	콜롬비아	26	멕시코
10	슬로베니아	27	우크라이나
11	벨기에	28	미국
12	체코	29	호주
13	네덜란드	30	튀니지
14	말레이시아	31	일본
15	아제르바이잔	32	독일
16	중국	33	페루
17	필리핀		

※ 브라질, 프랑스, 라트비아, 호주, 페루의 발언내용은 수록되지 않은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www.ohchr.org → human rights council)에서 동영상 시청가능

다. 마감발언 (김성환 외교부 제2차관)

Mr. President,

Thank you for the valuable opportunity to make this final statement. Given the time constraints we face, I will keep my remarks brief and to the point.

I would first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all delegate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as well as their constructive comments on our National Reports. I believe that we have engaged in sincere and highly constructive discussion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Troika for their invaluable work.

Some comments were highly appropriate as they were also raised during the process of domestic consultations or by the treaty monitoring bodies. Some points raised are relatively new and insightful. My delegation appreciates all of these. The sincere advice offered by Member States will serve as a valuable source of inspiration to my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achieve high standards in the relevant areas of human rights.

I believe that members of my delegation provided full answers to most of the points made during this session. However, some points requires more explanations. Due to time constraints of this session, we will try to give more answers in written form in the HRC plenary session in June. In this regard, my delegation has gained a sense of the high expect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in the ROK as revealed in the UPR.

This afternoon's session constitutes a valuable occasion to look at our human rights situation through the eyes of others. We will exert our best efforts to review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hat the Member States have made. We continue to be open to the recommendations, post-UPR dialogue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I am confident that in the post-review process, the results will be fully shared and discussed with all stakeholders.

I would also like to underline the importance of a number of key human rights issues. The Republic of Korea still has much to do to ensure the fuller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for all.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take a sophisticated approach and nurture greater expertise. This is vital to give more concrete shape

to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s and righ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legislation, to implement in a more concrete way the exist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o assume new obligations as we embrace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we take serious note of some concerns expressed and will engage in domestic discussions on that matter. For the enhancement of migrants' rights, we will seek to learn from the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of other receiving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policies of other states under review will serve as a valuable guide.

My delegation intends to accord more positive consideration to accession to the Conventions that we have not ratified. At this point,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we will be able to ratify some of the Conventions in the near future. However, some Conventions may require our intense discussion and deep scrutiny. I am convinced that they warrant our full attention.

I am sure that the second UPR 4 years later will bring to our attention issues other than those raised so far. We share the view that to make the UPR a credible mechanism leading to actual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effective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reemphasize that the Republic of Korea fully supports the UPR. We will contribute to the efforts to ensure that the UPR mechanism does not fail the voiceless and disappoint the hop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rough the UPR, which is surely one of the solutions that has the greatest potential to be of value in overcoming the limits fac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ussions, I firmly believe that humanity will take a step forward towards a better world.

Thank you.

라. 심의전 사전질의

ADVANCE QUES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DENMARK

-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hold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Will the Republic of Korea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law?
- What measures is the Republic of Korea taking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the larg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lacking legal permission to remain in the country?

LATVIA

-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f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59 countries from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have issued standing invitations to al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Considering the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special procedures (visits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1995,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05, 2006 and 2008,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2006) – would your country consider extending a standing invitation to al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future?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cknowledges the achievem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for women. Whereas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regarding women's rights is now in place, some areas remain of concern. This concerns especially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Could you comment?
- What concrete and proactive measures is the Korean government taking to make sure that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women, children, gays and lesbians, disabled persons and North-Korean refugees) receive equal treatment?
- The Special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voted on in this parliamentary session and thus will automatically lapse on 29 May. Although the death-penalty has not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10 years, does Korea consider to pass the Special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to law in the new National Assembly starting from 1 June 2008?

SWEDEN

- In its resolution 62/149 of 18 December 2007, the General Assembly called on states to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its national report to the 2008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ferred to the fact that no execution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1997, as well as to ongoing discussions with regard to the overall status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ul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laborate on these discussions and on the government's position with regard to a formal moratorium on executions in the countr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Could you please elaborate further on the extent to which civil society wa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your national report?
- Could you please elaborate further on the existence and status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ther it complies fully with the Paris Principles?
- A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has been introduced to the 15th 16th and 17th terms of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17th term ends in May 2008 and the proposed bill lapses, what steps will the new administration tak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during the 18th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 The ROK is an important investor in developing economies, and through its own recent history is well placed to share the experience of democratisation and establishing a human rights framework. What role can the ROK play in promoting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 What practical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nsure that the April 2007 Penal Procedure Code is justly implemented during the arrest and interrogation process, and to what extent has the video taping of interrogations been introduced?
- Some visa categories, notably 'E-2 Teaching Foreign Languages' ask applicants for their HIV statu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foreigners being deported because of their HIV status. Does the ROK Government consider this to be discrimination and, if so, what measures will it take to address this issue?

2. UPR 보고서 채택 (인권이사회 본회의, 6.12)

가. 모두발언 (이성주 주재네바대사)

On the highly significant occasion of the adoption of the Outcom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leased to reiterate its full support for the UPR mechanism. This offers an opportunity also for the ROK to reaffirm its unswerving commitment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priority in our national agenda.

May I als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so hard in this process. My Government deeply appreciates the valuable contribution by the Member States and indeed all other stakeholders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has been a collaborative effort and I in fact believe that the bonds of cooperation formed have in themselves proved to be another further benefit of this process. I would also, once again,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members of Troika, of course, for their invaluable work and for the outstanding leadership they have displayed in guiding us through this significant proc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last two UPR sessions, has embarked on the task of addressing all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all Member States in a fairer and more inclusive way. This is indeed a task of the utmost importance. The launch of the UPR represents a milestone and the task of ensuring that it is truly effective is one on which we should all focus our earnest efforts. The UN Member States, Treaty Monitoring Bodies, NGOs and the OHCHR are all protagonists in ensuring that the mechanism does indeed prove to be effective. In our case, we believe that the UPR has been constructive in terms of reaffirming the human rights issues before us. Furthermore, it has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galvanize our will to achieve improvements in the areas concerned.

Following the UPR Working Group review in May, my Government has accorded its thorough consideration to all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member States. We believe that the 33 recommendations set out in the UPR Working Group Report encompass almost all key human rights issues whether long-standing or relatively new.

As part of our efforts to gain a clearer overall picture of the recommendations we held an Inter-Ministerial Meeting on 30 May. And each Ministry which has been involved in the UPR process has undertaken a thorough study of the human rights issues raised in the review.

Mr. President,

I would now like to briefly touch upon my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 64 of the UPR Working Group Report. I am pleased to say that the Republic of Korea accepts most of the recommendations either in full or in part.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sponses to all recommendations is distributed to all delegations and also available on the HRC Extranet.

First of all, we are pleased to accept the entire group of recommendations relating to women's rights. The ROK has been consistent in its pursuit of a policy of advancing women's righ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as a deep commitment to incorporating gender perspective into government policies. To this end, it has been developing concrete initiatives and playing a leading role in addressing the issues in inter-Ministerial meetings.

Secondly, the Government will intensify efforts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by upholding the relevant laws, includ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Continued efforts focusing on various measures for their fuller social integration and more effective remedies will be made in order to further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Thirdly,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exert sincer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To this end, we are currently pursuing domestic procedures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urthly, the Republic of Korea also welcomes other important recommendations made by Member States relating to such matters as the implementation of observations by treaty bodies,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human rights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personnel,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marital

rape,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sexual crime, and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We will continue to seek ways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relevant domestic law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in these areas.

Mr. President,

For some of the recommendations set out in Paragraph 64 of the Working Group report, there is a need for further study of their implementation as these may require legislative actions or involve an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First of all, on the recommendations advocating further ratification and accession of human rights treaties, the Government will indeed carefully consider accession to various human rights instruments such as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More efforts need to be undertaken to bring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full conformity with these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Secondly, as we have indic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in the UPR Working Group, issues such as the death penalty,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quire further study and the forging of a broad national consensus; there is therefore a need for us to continue to make efforts in this direction.

Thirdly, issues such as the definition of torture, corporal punishment and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also entail the amendment of important provisions of our domestic law; we therefore need to give careful thought to ways in which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uch a process.

Fourthly,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is another matter which requires further study. There is a need for more in-depth consultations on this. In particular, there is a call for further tripartite consultations and inter-ministerial consultations for a review of the matter of trade union pluralism and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lastly, the recommendation on the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is the only one that my Government is not in a position to accept at this stage. We welcome the intention and spirit of this recommendation

to protect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some provisions in the Convention are in conflict with some key domestic laws. In the meantime, the Republic of Korea will exert every possible effor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current national laws which cover human rights and welfare for foreigners in the country.

Mr. President,

For the UPR to be a credible mechanism leading to actual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effective follow-up measures are imperative. These should include mechanisms to promote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by providing a platform for national dialogue on human rights by various stakeholders. A crucial part of this also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ublic scrutiny of government policies.

In this regard, we also engaged in discussions on a mechanism fo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n the coming four years. One suggestion put forward was that the recommendations could be included in the ongoing National Action Plan (NAP) 2007-11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other suggestion was to create a mechanism tasked exclusively with follow-up to issues raised during the UPR process.

Her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neither suggestion should exclude the recommendations that we deem difficult to implement *prima facie*. In this regard, my Government would like to underline that even a recommendation that it feels unable to accept for the moment will be given due consideration and, if necessary, may be the subject of discussions with all stakeholders.

Mr. President,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bear in mind all the recommendations made, as it seeks to strengthen its institutional and policy responses to achieve greate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in the ROK. We look forward to these recommendations serving as a valuable guide in our efforts to this end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as we constructively engage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other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bilateral and regional partners on human rights issues.

I would like to bring my Opening Statement to a close by emphasizing once again the great importa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ttaches to the UPR. We look forward to further valuable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in today's session.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se will yield concrete suggestions for the best future course in our shared efforts in pursuit of the noble aim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goal which unites us all.

Thank you.

나. 각국·이해관계자 발언

다. 마감발언 (이성주 주제네바대사)

Mr. President,
Madame High Commissioner,

I would first like to thank once again all the delegat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constructive comments they have expressed and encouragements they have given my government today. A number of concerns raised and advice offered in the process of the UPR will serve as a valuable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urther materialize its firm commitment to achieving high standards in the relevant areas of human rights.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thanks to the Troika and the Council Secretariat for their hard work.

Mr. President,

The UPR process gives all of u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a specific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in its entirety. A broad consultation process with all relevant stake holders at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national report helps to sensitize the states under review to what they should do for the cause of human rights. Furthermore, interaction among all the relevant stakeholders will be inevitable and provide invaluable assets in the follow-up process. I would say this is one of the good reasons why we can be optimistic at this stage that the UPR will serve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long run.

I wish to assure all of you once again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main firmly supportive of the UPR, and join the collectiv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nsuring that the UPR mechanism becomes a real added value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rldwide.

I thank you.

III . UPR 관련 주요 보고서

1. 국가보고서(국·영문)
2. 인권고등판무관실 취합보고서
3. NGO 종합요약 보고서
4. 우리나라 UPR 결과 최종보고서

IV. 기 타

- UPR 국내협의 과정 등 -

1. NGO와의 협의회 개최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3.18(화) 15:00, 13층 종합상황실
- 참석자
 - 주 재 : 외교부 송영완 국제기구정책관
 - 정 부 : 외교부 인권사회과 장재복 과장, 장현철 서기관, 여성부 교류협력과 강선혜, 이진희 사무관, 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마성호 감독관, 노동조합과 박윤기 사무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국방부 인권팀 이성주 팀장, 교육부 다자협력과 김희상 사무관
 - 국가인권위 : 국제협력팀 오유진 담당
 - 시민단체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 한국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김동애 위원장,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
- ※ NGO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민변 등은 협의회 전 과정에 대한 언론 비공개 방침을 이유로 불참
- 진행사항
 - 모두말씀(국제기구정책관)
 - 국가보고서 소개(인권사회과장) paragraph별로 NGO측 질의·comment에 이은 정부측 설명

나. 시민단체측 제기사항

- 국가인권위
 - 국내 인권기관 활동에서 여타 사법부, 국회 등의 역할 포함 검토 (여타 국가의 보고서 참조 필요)
 - 차별의 예방 및 구제는 권리가 아니라 인권 원칙인 만큼 장애인, 외국인 등 해당 부분으로 분리해서 기술하고, 전반적인 차별 예방 노력은 별도로 비중있게 기술
 - 제30항 형소법 개정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 Amnesty International

- 신체의 자유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 및 제도적으로 개선된 내용 포함 필요
- 여성의 권리에서와 같이 구체적 수치를 가급적 많이 기술 필요 (다음 UPR시 비교의 척도가 되는 장점이 있음)
- 사형제도 관련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아울러 정부측의 노력 부분도 보완 필요
- 제77항(남북분단의 특수성), 제78항(병역의무)은 너무 부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 여타 NGO

- 삼청 교육대 등 과거사 관련 구제조치 등이 미흡했던 부분을 언급 요청
-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 인권 관련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줄 것을 주문(제49항, 제66항)

○ 여타 editorial correction 일부 제기

다. 보완대책

- 상기 제기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수정해 나갈 방침 : 관계부처와 협의
-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3.23)을 감안, 새로운 내용 추가여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검토

2. 국가보고서에 대한 일부 NGO 단체 입장

정부보고서 초안에 관한 총평

첫째,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의 기본원칙, 기본적 접근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상용구, 미사여구들을 보고서 곳곳에서 실제적인 내용 없이 나열하면서 마치 이러한 원칙이나 접근방식이 정부의 기존 입장인양 주장함으로써 정부의 미흡한 혹은 그릇된 인권의식을 호도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이 정부의 확고한 공약”(초안 제3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원칙에 대한 인식하에 이를 보장하고 증진”(초안 제24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헌법상 기본권을 바라보는 인식조차도 “자유권적 기본권-인간의 권리-소극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국민의 권리-적극적 권리”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이 유엔인권이사회를 겨냥한 단순한 대외용 주장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고서 가장 첫 번째 문단인 제1항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책임과 의무”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동 규정이 인권협약 등에 대해서도 적용”(초안 제17항) 된다고 정부는 언급하고는 있지만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약규정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NGO 보고서 각주1)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충분히 고려”(초안 제17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고려의

대상일 수 없고 적용의 대상이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초안 제11항)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그 국내적 이행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을 가장 중요한 인권문서로 인식하고, 이를 준수코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헌법소송 등에서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던 기존의 정부의 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정부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으면서, 상당수의 법과 제도, 계획의 나열을 통해 형식적인 성과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NAP)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국내적인 인권의 제도적 강화 및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 중”(초안 제2항)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공유 희망사례”인 대표적인 3대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초안 제68항, 제69항), 기한까지 명확히 설정한 세부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고 (NGO보고서 각주5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 포함되었던 다음의 내용들이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보편적 정례검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부록 참조).

A. 시민적·정치적 권리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인정 범위 확대
- 독립된 군 검찰국 설치
- 국가보안법의 폐지
-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 사형제 폐지

B.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산재보험제도 개선
- 고용보험제도 개선

- 정리해고의 실제적 기준의 명확화
-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 지역 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한 배치
-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개인의 의료이용 정보의 유출 방지
- 주거대책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철거 금지
-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

C. 사회적 약자·소수자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의 보장
-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 난민인정에 관한 공정한 절차
-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제도 개선

정부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인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법이라는 점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초안 제54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시에 아무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성의 강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억압 및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NGO보고서 2-2. 참조) 등의 인권침해상황을 마치 외부요인에 의해 주어진 외적 환경인양 규정지으면서 기존의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원인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는 현상의 나열과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이라는 제목 하에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지만 10년 동안 극복하고 다시 GDP 기준으로 세계 13위, 무역규모로 세계 11위의 국가로 재도약” 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력 집중,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부담”(초안 제74항)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초안 제80항),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현실화, 4대보험의 적용확대 및 내실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초안 제81항),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초안 제82항) 등을 들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악화된 취약 집단의 인권상황의 원인이 된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력 집중,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주어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정부는 스스로의 인권의식의 결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한 채, 국민의 공감대의 부재나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을 핑계로 한국 내의 핵심적인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고 관련된 인권침해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인권 부분에 7개항을 할애(초안 제35항~38항, 제70항~제72항) 하고 그 인권의 신장을 정부의 3대 성과 중의 하나로 뽑고 있으면서도, “여성 및 가족의 양육에 관한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하는 문제를 출산율 감소에 대처한다는 정책목표의 수단으로 고려함(초안 제83항)으로써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접근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법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법제에 대하여 얼마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강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이 정도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생명권”의 항목 아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초안 제25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인지, 소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인권의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또한 “국방의 근간”이 “국민개병 및 징병제”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여성이나 병역의무면제자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초안 제78조)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보다 국내외 정국이 훨씬 불안정한 대다수의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국은 징병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금기시한 채 병역의 문제를 남녀 차별의 문제 혹은 면제자와 징병대상자간의 차별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징병대상자의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앞서야하는 인권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부는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논하기에 앞서 답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정부는 “그 개폐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초안 제86항)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948년 제정 이래 60년 동안 도대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이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해에 머물고 있고, 교육, 근로, 보건, 환경, 문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이나 침해를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초안 제79항) 대중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초안 제88항)는 정부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정부 스스로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어떻게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까지 합리화시키려 드는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접근은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권리는 권리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권을 바라보는 최소한의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인권의 문제를 국민적 합의나 국민정서에 대한 여론조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접근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권의 문제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인권의 문제는 시기 상조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 최초의 문제제기 시 불법이 아니

있던 적도 없다. ‘국민적 합의’ 혹은 ‘국민의 정서’가 인권의 척도라면 노예제는 현재까지도 온존하였을 것이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양성화, 해고의 자유화 등 전반적으로 반인권적 정책기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부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예 그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0%(870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의 대량해고, 외주화 등의 편법이 가능하고 허술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NGO보고서 3-7. 참조)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고서에서 “아직 시행 초기인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비정규직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 (초안 제82항)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8년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방향의 정책기조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언급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 언급되기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특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초안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고용안정성과 노동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여성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의 표출이나 의견반영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의 억압 법제의 강화와 다변화를 통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NGO보고서 2-2.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2008년 3월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노조의 불법행동 의법조처 위한 ‘불법행위 대응팀’ 구성 예정”, 3월 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의 “체포전담부대 신설 등 불법시위자 예외 없이 사법처리” 등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인권기준 중에서도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보고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심각해지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인 형태의 거짓말일 수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이주노동자 인권연대측이 상세의견 제시하였으나, 본 결과보고서에는 수록치 않음.

3. 기타 의견수렴

가. 외교부 정책메일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국민과 함께 열린 외교정책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34호】 2008년 03월 19일 수요일 지난호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준비 관련 의견수렴

우리나라는 오는 5월 7일(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기에서 인권현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3월 18일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UPR 국가보고서 관련 정부-민간단체간 협의회 모습

UPR은 지난 2006년 6월 출범한 인권이사회가 모든(Universal) 국가의 인권상황을 대화와 협력의 정신하에 정기적(Periodic)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각국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정부는 상기 UPR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3월 24일(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코자 하오니, 별첨 국가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이메일(humanrights@mofat.go.kr)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진시에는 **성명, 소속단체, 직책** 등을 꼭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UPR 국가보고서 초안 바로가기



한미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힘



안전한 해외여행!
SAFETY INFO
영사콜센터



**빠르고 편리한
여권 접수 예약 서비스**
여권접수예약하기



**EXPO 2012
YEosu KOREA**

한글의견 받으시는 메일서비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본 이메일서비스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하려면 **내정보수정하기**를,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설정**을 해주십시오.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전화:02-2100-0801, 팩스:02-2100-7919
Copyright © 20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l rights Reserved.

나.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게재

- 참여민원 → 국민광장 → 정책토론에서 일반시민 의견 개진
- 정무 → 다자외교 → 인권사회에서 심의관련 자료 전파

4. UPR 후속조치 이행관련 간담회 개최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5.30(금) 10:00, 외교부 17층 상황실
- 참석자
 - 외교부, 법무부, 노동부, 여성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 담당 과장 및 실무자

나. 주요 논의사항

1) UPR 후속 이행 메카니즘

- 모든 권고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행,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단기 이행이 어려운 과제라도 최소한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검토 노력이 필요
-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반영 등 기존 협의채널을 활용하는 방법과 UPR 이행만을 위한 별도의 메카니즘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 가능
- 국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간 추가 협의를 필요
 - ※ 국가인권위 : 정부의 후속 이행 노력 등을 보아가며 독자적인 방법도 검토

2) UPR 평가(국가인권위)

- 외교부 중심의 치밀한 준비, 관계부처 참가자의 적극적 답변자세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 국내 인권이슈가 거의 전부 제기된 바, 이는 국가인권위 및 국내 NGO의 보고서 제출 및 현지 노력에 기인

3) 각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검토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참석자 입장 개진

4) 후속이행 과정에서의 NGO 참여 문제

- 향후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는 외교부에서 법무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의하여 NGO와의 협의 방안을 강구 예정
 - ※ UPR 보고서 준비시 NGO와의 협의회 및 금번 간담회에 일부 NGO의 공개 토론회 형식 개최 제의에 대해 정부측이 수용치 않자 불참

V. 참고자료

1. 인권이사회 설립결의
2. 인권이사회 제도구축 관련 결의
3. 인권이사회 제도구축 후속결정
4. 트로이카 선출 의장성명
5. UPR modality 및 관행에 관한 의장성명
6. 전체회의 modality
7. UPR 전체일정
8. 제2차 UPR 회기일정